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박춘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 수목 보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. 또한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이는 날로 심각해 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옥상녹화를 통한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를 장려하고,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옥상녹화공간이 도심 녹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

하기 위함입니다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서 협약기간 연장 및 연장
한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
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또한 안 제12조에서 ‘유지관리실태조사’를 ‘시설점검’으로 명확
히 하였으며, 안 별표2에서는 옥상녹화 식재기준의 녹지율을
완화하고, 안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의 옥상녹화참여신
청서 및 관리대장기록방법을 삭제토록 하여 옥상녹화가 장려될
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
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